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6
----------	-----

2019. 6. 24. (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숙애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9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2019년 6월 4일

라. 상정일자: 2019년 6월 14일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숙애 의원)

가. 제안이유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노동 권리의식을 높여,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안 제3조)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안 제5, 6조)
- 노동인권교육 교수·학습자료 제공(안 제8조)
-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원연수(안 제9조)
- 노동인권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재 우리 사회의 근로현실을 보면,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과정이나 각종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 산업재해 위험 등과 같은 취약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권과 노동인권이 보장된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노동인권 의식 함양 및 노동인권문제해결능력 증진을 위해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노동인권교육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안 제6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파악과 교육적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노동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실행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8조에 노동인권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각급 학교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 학기별로 1회 이상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각급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6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북

도 내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 기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확보
3.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
4.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5.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8조(교수·학습자료 제공)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수·학습자료를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 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1회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직업교육과정 위탁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3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0.>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 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 6. 29.]

[제76조의2에서 이동 <2015. 9. 15.>]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1. 1. 29., 2001. 3. 2., 2007. 5. 16., 2010. 6. 29., 2013. 3. 23.>

1. 삭제 <2010. 6. 29.>
2. 삭제 <2010. 6. 29.>
3. 삭제 <2010. 6. 29.>
4. 삭제 <2010. 6. 29.>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 계열의 고등학교
8. 삭제 <2010. 6. 29.>
9. 삭제 <2010. 6. 29.>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 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1. 10. 20.>

②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14. 2. 18., 2014. 12.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 6. 29.>

충청북도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노동인권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교원 연수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